

제25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2024. 4. 26.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경 과

의안 제315호로 2024년 4월 9일 이규선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4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기피 현상이 점차 심각해지는 실태에 대응하여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3일의 특별휴가(새내기 도약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상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특별휴가의 대상에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을 추가하고, 그 휴가일수는 3일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되, 조항의 가독성을 제고하고자 재직기간별 휴가일수에 대한 구분을 각 호로 개편하여 정리함. (안 제15조제4항)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4. 3. 25. ~ 3. 30.):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에게 재직기간에 따른 3일의 휴가를 부여하여 근무 여건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5조제4항(특별휴가)에는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3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 검토 결과

- 현행 조례 제15조제4항의 재직기간에 따른 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으며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신규 공무원들에게는 별도의 휴가 일수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음.

재 직 기 간	현 행	개 정 안
1년 이상 5년 미만	없음	3일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20일
30년 이상	30일	30일

- 한편, 최근 공무원 조직 내에서는 “젊은 공무원”들의 퇴사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속 5년 미만의 공무원 퇴직자 수는 2018년 5,670명에서 2023년 1만 3,566명으로 최근 5년 사이에 약 2배 이상 늘어난 실정이며, “젊은 공무원”들이 공직을 이탈하는 주요 요인은 민간기업 대비 낮은 임금수준, 워라밸이 보장되지 않는 조직문화 등의 이유로 나타남.
- 이처럼 공직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재직기간에 따른 특별휴가일수가 없는 1년 이상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에게 3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sup>1)</sup>라고 사료됨.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sup>2)</sup>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바, 상위법과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1) 재직기간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 특별휴가 부여 타 지자체 사례:  
충정남도·의회, 경기도·의회, 청주시·의회, 서천군·의회, 예산군·의회, 보령시, 안양시·의회, 완주군·의회

2)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참 고 자 료

##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